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-82호

**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예정구역
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**

강북구 관내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지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위제한하고, 『토지 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19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1. 행위제한 사유

- 강북구 관내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 제한을 통한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고 사업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함

2. 행위제한 개요

가. 행위제한 기준일: 행위제한의 고시가 있는 날

나. 행위제한 기간: 고시일로부터 3년(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기간연장 가능)

※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될 경우 행위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봄

다. 제한지역

연번	구역명	단지명	위 치	면 적(㎡)	제한기간
1	변동주공1단지 공동주택 재건축	변동1단지 주공아파트	변동 242 일대	74,982.4	고시일로부터 3년
2	변동주공4단지 공동주택 재건축	변동4단지 주공아파트	변동 234 일대	56,972.5	고시일로부터 3년

라. 제한대상 행위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1호 ~ 제4호)

- 건축물의 건축, 토지의 분할
- 「건축법」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
대장으로 전환
- 「건축법」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

3. 관계도면: 붙임 참조

※ 본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 불가함

4. 관계서류는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65)에 비치

□ 붙임: 지형도면

번동 242 일대 (번동주공1단지)



번동 234 일대 (번동주공4단지)

